

## 사회복지법인 송원

### 이사회 회의록

- 1) 회의 통보일자 : 2026년 12월 26일
- 2) 회의 개최일시 : 2026년 1월 5일 15:00
- 3) 회의 개최장소 : 법인 사무실
- 4) 회의 종 류 : 임시 이사회
- 5)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 [REDACTED]  
이 사 : [REDACTED], [REDACTED], [REDACTED]
- 6) 안 건 : 1)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장, 인성원장 임명 취소의 건.  
2)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장, 인성원장 채용의 건.

####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생략) 이사 7명 중 4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대표이사 [REDACTED] : (안건상정에 이어 의안 설명에 들어가다.)

다음 안건은 법인 산하시설 시설장 임명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실시한 법인 지도점검에서, 2025년 12월 19일 임명된 부산희망 등대종합지원센터와 인성원 시설장 예정자의 자격요건이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35조 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어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 [REDACTED] : 네, 시설장 예정자의 자격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임명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당 법인의 투명한 채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므로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인성원 시설장 예정자의 임명 취소의 건을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REDACTED]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REDACTED] : 이어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인성원 시설장 예정자의 임명이 취소되었으므로, 신속하게 채용공고를 통해 두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REDACTED] : 당 법인에서 기존 진행되었던 시설장의 자격요건 문제로 임명이 취소되면서 인사계획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장과 인성원장 채용을 긴급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REDACTED]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이 사 [REDACTED] : 그러면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인성원에 시설장이 채용되기 전까지 운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이사 [REDACTED]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인성원은 신임 시설장이 채용되기 전까지 사무국장이 시설장직무대행을 맡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2026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부산희망드림센터 재수탁 심의 및 사무 관련하여 제가 개인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법인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송원노인전문요양원장 [REDACTED] 이사님께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시어 법인 수탁시설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라정현 : 네, 알겠습니다.

대 표 이 사 : 참석이사 전원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하다.

2026. 1. 5.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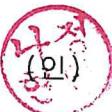
대표이사 :

이 [REDACTED]



이사 :

이 [REDACTED]



감사 :

이 [REDACTED]



이 [REDACTED]

